

# 「竹島考證」의 사료 왜곡 - ‘한국 측 인용서’를 중심으로 -\*

김호동\*\*

(e-mail : khd223@ynu.ac.kr)

---

## 目 次

---

1. 머리말
  2. 『竹島考證』의 한국 측 인용서 왜곡의 실상과 그 의도
    - 2.1 『竹島考證』 저술의 경위
    - 2.2 한국 측 인용서 왜곡의 실상
  3. 맺음말
- 
- 

## 1. 머리말

2008년 3월 8일,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http://www.mofa.go.jp/>)를 통해 ‘竹島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글을 일어·한국어·영어로 게시하여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하고 자국의 영토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에 반해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1일,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도나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이 안 나왔으면 했는데 나왔다”고 하면서 “과거에 얽매어 미래로 가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일본의) 정치인은 가끔 거북한 발언을 한다”며 “그러나 정치인이 발언하는 것을 일일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어느 나라나 정치

---

\* 이 논문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정책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사

인은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미래를 향해서 한일이 공동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두 나라의 번영에도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번영에도 도움이 되고,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양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되풀이되는 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7월 14일, 중등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문제를 북방영토와 함께 기술하기로 발표하였다. 일본 외무성과 문부과학성의 행위는 개인의 의견이 결코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인 1881년, 일본 외무성은 기타자와 세이세이(北澤正誠)로 하여금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도록 하였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당시로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하여 『竹島考證』을 서술하고, 이를 간단히 요약한 『竹島版圖所屬考』를 1881년 8월 20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하였다. 그의 『竹島考證』에서 제기된 울릉도에 대한 고유영토설, 17세기 인지론과 ‘空島制’에 대한 논의는 1905년 죽도(竹島=독도)를 ‘無主地’라고 하여 시마네현 의회 고시를 통해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킨 ‘無主地先占論’이란 논리로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sup> 그런 점에서 선부른 과거사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훗날 미래의 시점에 우리의 발목잡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竹島’ 게시 글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논리의 왜곡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기타자와 세이세이의 『竹島考證』이 한국 측 자료를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왜곡하였는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기타자와 세이세이의 『竹島考證』은 신용하와 정영미에 의해 각기 번역된 바가 있다.<sup>2)</sup> 그렇지만 번역에만 치중하다보니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인용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필자는 신용하와 정영미의 번역문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竹島考證』이 머리말 없이 ‘竹島考證引用書’를 제일 앞에 내세웠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인용서’에 나오는 조선측 인용서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용된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용서’의 인용이 심히 왜곡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1) 김호동(2007.6),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pp.6-7.

2) 신용하 편저(2001), 「竹島考證」, 『독도영유권자료의 탐구』 4, 정영미(2006.5), 『독도자료집 II [竹島考證]』, 바른역사정립기획단.

## 2. 『竹島考證』의 한국 측 인용서 왜곡의 실상과 그 의도

### 2.1 『竹島考證』 저술의 경위

기타자와 세이세이의 『竹島考證』은 1881년에 일본 외무성의 지시에 의해 저술된 것이다. 왜 일본 외무성은 기타자와 세이세이로 하여금 『竹島考證』을 만들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죽도고증』을 번역한 신용하와 정영미는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신용하는 “일본인들이 한국 개항 후 울릉도에 불법 입도하여 삼림 재목들을 도벌하여 가면서 불법으로 채류하기 시작하자, 조선정부는 1881년 5월 일본 외무성에 항의문서를 보내어 일본인들의 조선울릉도예의 도항과 불법입도 금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한 회답을 조선정부에 즉각 보내지 않고 北澤正誠에게 죽도(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이에 “北澤正誠은 당시로서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하여 먼저 연구 결과로서 상세한 『竹島考證』을 서술하고, 이를 간단히 요약한 『竹島版圖所屬考』라는 보고서를 1881년 8월 20일에 작성하여 외무성에 제출하였다”고 한다.<sup>3)</sup> 또 다른 번역자인 정영미는 “명치유신 이후 동해상에는 새로운 섬인 ‘松島’를 발견하였다는데 일본 외무성으로 개척원이 쇄도하게 되자 외무성의 지시를 받은 기타자와 세이세이가 6세기부터 19세기 후반(1881년)까지의 울릉도(일본명 죽도)와 독도(일본명 송도)에 관한 기록을 집성하여 분석하고 보고한다”고 하여<sup>4)</sup>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다른 원인을 내놓게 된 것은 기타자와 세이세이가 ‘竹島考證’에서 서문 등을 쓰지 않고 ‘竹島考證인용서’만 쓰고, 본문으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일본외교문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은 1881년 10월 7일 조선국 울릉도에 邦人, 즉 일본인들의 도항을 금지할 것을 상신하였다. 이 문서에는 첨부된 ‘부속서’가 2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기타자와 세이세이의 『竹島版圖所屬考』이고, 나머지 하나는 조선정부에 보낸 書翰案이다.<sup>5)</sup> 일본 외무성은 6월 조선의 예조판서 沈舜澤이 울릉도에 일본인이 들어와 漁採하는 것을 금해달라는 항의

3) 신용하, 앞의 책 참조.

4) 정영미, 앞의 책 참조.

5) <161 朝鮮國鬱陵島ノ儀ニ付朝鮮政府ハ送翰 儀申上ノ件> 「事項10 朝鮮國鬱陵島ニ邦人渡航禁止ノ件」(『日本外交文書(韓國篇)』3(自1881 至1886), 태동문화사, 1981, 101~106쪽)

附屬書 一 朝鮮政府ハ送書翰案

二 北澤正誠稿「竹島版圖」所屬

문서를 받았다. 심순택의 항의 문서는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나무를 찍어내어 원산과 부산으로 보내려하는 것을 금해달라는 것이다. 당초 울릉도 수토관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강원감사 임한수는 일본이 울릉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보고를 통리기무아문에 하였다. 고종은 일본에 항의토록 하고,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하여 울릉도 개척 여부를 살피게 하였다.<sup>6)</sup> 이에 따라 예조판서 심순택의 명의로 일본인들의 철수와 嚴禁을 요구하는 서한을 일본 외무성에 보내어 항의하였다. 그 문서가 『日本外交文書(韓國篇)』 3 「事項10 朝鮮國鬱陵島ニ邦人渡航禁止ノ件」 ‘160 8月 27日 朝鮮國鬱陵島へ我國民入漁採候儀ニ付上申ノ件’의 ‘부속서’에 실려 있다. 이 부속서에는 일본정부가 들은 바가 없는 사항이므로 사실을 조사해 조치하겠다는 답신이 실려 있다.<sup>7)</sup> 일본

6) 『高宗實錄』 高宗 18년 5월 21일.

7) <160 8月 27日 朝鮮國鬱陵島へ我國民入漁採候儀ニ付上申ノ件> 「事項10 朝鮮國鬱陵島ニ邦人渡航禁止ノ件」(『日本外交文書(韓國篇)』 3(自1881 至1886), 태동문화사, 1981, pp.99~100)

附屬書 一 辛巳六月沈禮曹判書來翰

二 八月二十日付上野外務大輔返翰

朝鮮國鬱陵島へ我國人民往漁採候者有之ニ付別紙甲號ノ通同國禮曹判書ヨリ照會有之候ニ因リ別紙乙號 通リ及回復候間則往復書翰寫相添及上申候也

明治14年 8월 27日

外務卿代理

外務大輔 上野景範

太政大臣 三條實美殿

(附屬書 一) 甲號

大朝鮮國禮曹判書 沈 舜澤 呈書

大日本國外務卿井上馨閣下

謹茲照會者 卽我江原道觀察使所報 則鬱陵島搜討官巡檢之際 有貴國人士名 在其島伐木積置 將送于元山釜山港云 蓋此鬱陵島 粵自三韓係在本國土地物產 詳載於本國輿圖 逮我朝 以海路危險 撤其居 空其地 封植長養 而派官審檢 歲以爲常 重舊蔽固疆圍之道 不得不然爾 前此一百八十九年癸酉 以貴國人錯認島名事屢度往復 竟至歸正而 自貴國飭于海民 永不許入往漁採 其書尙載在掌故可按也 今此 貴國人之懵然來研 有缺入境問禁之義 且交隣貴誠信 梁灌楚菰 晉還吳獵 其非今日之所相勉者乎 茲庸開陳 望貴政府嚴申邊禁 俾還往船舶更舟得味例踵誤益篤兩國之孚永久無替 深所幸也 謹此前付 順祈臺祉敬具

辛巳 六月 日

禮曹判書 沈舜澤

(附屬書 二) 乙號

無號

以書翰致啓上候陳者貴國鬱陵島ニ我國人民入往漁採候者有之境ニ入り禁ノ間ノ義ヲ缺ク還往船舶ヲ更ニ味例誤ヲ踵ク事ヲ得ルカヲ益兩國ノ孚ヲ篤クテ事ヲ欲セリ、旨辛巳六月 日貴函ヲ以 御申越ノ趣委曲致了悉候然ニ右ノ寔ニ我政府未曾聞ノ事ニ有之候得者卽チ事實ヲ調査シ要スニ兩國ノ厚好ニ障得無之様致シ可申候此段回答得貴意候敬具

明治14年 8月 20日

日本外務卿代理

외무성은 그 조사를 北澤正誠에게 맡겼고, 北澤正誠은 그 결과를 담은 『竹島版圖所屬考』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하였고, 일본 외무성은 이에 의거해 1881년 10월 7일 조선국 울릉도에 邦人, 즉 일본인들의 도항을 금지할 것을 상신하면서, 그 문서의 부속서에 『竹島版圖所屬考』를 실었다. 이로 보아 『竹島考證』은 신용하의 지적처럼 조선정부가 일본 외무성에 항의문서를 보내어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의 도항과 불법입도의 금지 조치를 요구한데 대한<sup>8)</sup> 대응에 앞서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 세이세이로 하여금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여 만든 서책임이 분명하다.

## 2.2 한국 측 인용서 왜곡의 실상

『竹島考證』은 다른 책과는 달리 ‘서론’이 없고, ‘竹島考證引用書’가 제일 앞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外務大輔 上野景範

朝鮮

禮曹判書 沈舜澤 閣下

(右漢譯文)

謹茲照覆者 卽接辛巳六月 日貴函 貴國鬱陵島有我民人入往漁採者 缺入境問禁之義 俾還往船舶 更勿得味例踵誤 益篤兩國之孚 書意具悉 此寔係我政府未曾聞之事 卽當調查事實 要俾莫碍於兩國厚好也 謹茲照覆竝頌 臺祉 敬具

明治 14년 8月 20日

日本外務卿代理

外務大輔 上野景範

朝鮮

禮曹判書 沈舜澤 閣下

8) 「예조판서가 일본 외무경에게 글을 보내었는데, 대략 이르기를, “우리 강원도 관찰사의 보고한 바를 접수하건대, ‘울릉도 수토관이 섬을 돌아다니며 시찰할 즈음에 귀국 사람 7 명이 그 섬에서 벌목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이 섬은 옛날 삼한시대부터 토지와 물산이 본국의 여지도에 상세히 실려 있으며, 우리 왕조에 이르러서도 바닷길이 위험하다고 하여 물러 나와서 살게 하고 그 땅을 비워두었으나, 관원을 파견하여 시찰하는 것은 해마다 상례로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9년 전인 계유년(1693, 숙종 19)에 귀국 사람들이 섬 이름을 잘못 알고 여러 차례 왕복하였으나 마침내 모든 것이 바르데로 돌아가기에 이르렀고, 귀국에서도 영구히 어민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귀국 사람들이 명칭하게 와서 나무를 베었는데, 이것은 국경을 들어올 적에 금령을 물어보는 뜻에 결여된 점이 있을뿐더러, 또 어찌 이것이 교린하는 데에 정상과 신의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바라건대 변방의 금령을 엄하게 단속하여, 연달아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저들이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사건에 관계되므로, 즉시 마땅히 사실을 조사할 것입니다. 요컨대, 양국의 우호관계를 두텁게 하려는 뜻이 防碍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통문관지』 권11 고종 18년 신사.

## 竹島考證引用書

朝鮮書: 東國通鑑, 東國輿地勝覽, 高麗史, 通文館志  
 中國書: 武備志, 登壇必究, 圖書篇, 八篇類纂, 朝鮮賦  
 國書: 大日本史, 竹島雜誌, 竹島圖說, 朝鮮通交大記, 善隣通書, 竹島紀事, 竹島考,  
 磯竹島覺書, 通航一覽  
 公信類: 竹島書類雜纂, 松島之議, 浦潮斯德來信, 浦潮港日記

明治十四年八月奉命取調 北澤正誠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조선 및 일본, 중국의 서책에 이르기까지의 ‘인용서’를 먼저 밝힘으로써 자료의 광범위한 섭렵을 과시하는 한편 글의 객관적 신뢰성을 드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었다고 볼 수 있다. 『竹島考證』에 인용된 조선 측 인용서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인용되었는가를 논하기에 앞서 『竹島考證』의 체제를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竹島考證』은 인용서목을 밝힌 뒤 본문에서 먼저 죽도의 명칭의 유래를 밝히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런 저런 말이 분분하여 정설이 없으므로, 지금 우리나라에 전해져오는 말과 조선과 중국에서 전해져 오는 기록을 들어 그 말의 다르고 같음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고 하여<sup>9)</sup> 죽도(울릉도)가 조선과 일본 사이의 분쟁지역임을 은연중 드러내어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본과 조선, 그리고 중국 측의 기록을 통해 그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일본 기록을 인용하여 ‘죽도(울릉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0)</sup>

- ① 먼저,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말에 따라 그 섬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해보면, 松浦武四郎의 『竹島雜誌』에는 『日本風土記』를 인용하여 ‘다케시마(他計甚麼)’라 訓讀되어 있는데, 그 땅의 동쪽 해안에 두 尺이나 되는 大竹이 있으므로 소위 竹島라는 이름이 붙은 연유가 된다고 하였다[『竹島圖說』에 의거하여 한 말이다]. 그리고 『北史』 권14 중의 「倭傳」을 인용하여 “수나라가 文林郎과 裴世淸을 사신으로 보냈다. 그들이 백제로 건너가 竹島에 이르렀는데, 남쪽으로 탐라가 보이고 운운”이라 한 것과, 또 “치쿠시국(竹斯國)의 竹島라고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섬에 틀림없다”는 말도 기록하

9) 『竹島考證』上, “竹島[磯竹島라고도 한다]는 본국과 조선 사이에 있는 孤島이다. 둘레가 10리 정도 되는 험하고 높은 산으로 계곡이 깊고 고요하며 나무가 울창하고 대나무가 뻗뻗이 들어서 있다. 땅은 비옥하고 많은 산물이 난다[이상은 『竹島考』에 나오는 말이다]. 단 그 땅이 두 나라 사이에 있어 예로부터 이런 저런 말이 분분하여 정설이 없으므로, 지금 우리나라에 전해져오는 말과 조선과 중국에서 전해져 오는 기록을 들어 그 말의 다르고 같음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0) 이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竹島考證』의 번역은 정영미의 번역(『독도자료집 II 竹島考證』, 바른역사정립기획단, 2006.5)을 주로 따랐고, 인용문에 달린 주석도 주로 정영미의 주석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거는 일일이 밝히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였다『草蘆雜談』을 인용하여 한 말이다. 元和 2년(1616) 호키 요나고(米子) 주민인 대谷甚吉과 村川市兵衛 두 사람이 竹島에 도해하고 싶다고 官에 청원하였다. 元和 3년 松平光政(=松平新太郎)이 호키의 영주가 되자 두 사람의 청원에 따라 이 건을 강력히 막부에 청원하였다. 元和 4년(1618)이 되자 막부는 두 상인을 에도로 불러 ‘竹島渡海免許 朱印狀’을 내리셨다. 이때부터 두 상인은 매년 도해하여 어로를 행하였고, 그로부터 74년 째 되는 元祿 5년(1692)에 이르러, 조선인이 竹島에 와서 어로를 행하게 되자 두 상인의 이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元祿 9년(1696) 봄이 되자 조선이 竹島가 자기나라 영역이라는 말을 해서 결국 竹島를 조선에 주었다고 한다. 이것이 그 섬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이다.

그는 위 자료에서 보다시피 『竹島雜誌』에서 인용한 『日本風土記』, 『竹島圖說』, 『北史』, 『草蘆雜談』에 근거하여 죽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1618년~1692년 사이 74년간 일본인에 의해 竹島가 독점되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1618년의 ‘竹島渡海免許 朱印狀’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 후 1692년부터 조선인이 울릉도에 조업하기 시작하였고, 1696년에 조선이 자기네 땅이라 해서 돌려주었다고 하였다.

사료 ①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첫째, 『北史』 권14 중의 「倭傳」에서 인용한 한반도의 서남해에 있는 ‘竹島’는 울릉도(竹島)가 될 수 없다.<sup>11)</sup> 둘째,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1618년~1692년 사이 74년간 일본인에 의한 竹島를 독점했다고 부각시키지만 광해군 12년(1620)에 쓰시마번이 에도막부의 명을 받아 조선국에 속한 섬 다케시마에서 밀무역을 하고 있던 사기사카 야자에몬(鷺坂彌左衛門)·니우에몬(仁右衛門) 부자를 潛商의 죄로 처벌한 것으로 보아<sup>12)</sup> 1618년부터 일본이 울릉도를 독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재 일본은 호키주(伯耆州) 요나고항(米子町)의 오오야(大谷)·무라카야(村川) 양 가(家)에서 인조 3년(1625, 寬永 2)에 막부로부터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를 얻어 울릉도에 출어하였고, 그때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sup>13)</sup> 기타자와 세이세이가 1618년부터 죽도를 오로지했다고 한 것은 틀린 것이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이나바(因幡州)<sup>14)</sup> 사람인 江石梁이라는 자의 『竹島考』

11) 신용하, 앞의 책, 31쪽

12) 『通航一覽』 卷129, 朝鮮國部 百五. 『通航一覽』은 嘉永 6년(1853) 막부의 명령에 따라 大學頭인 하야시 아키라(林飛·復齋)가 여러 외국과의 응접을 위한 자료로 편찬한 에도막부의 대외관계 사례집이다. 미카와(三河) 시대부터 文政 8년(1825)의 異國船 격퇴령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본편 350권, 부록 2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편은 관계 제국과 나가사키로 부문을 나누어 각각의 항목을 만들어서 편집 연도순으로 관련사료를 제시하였다. 부록은 海防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인용 사료는 광범위하며 기술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본 근세의 대외관계의 기본 사료이다. 國書刊行會에서 간행되었다. 송병기편, 『독도영유권자료선』(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에 1696년의 「竹島渡海禁止令」, 「告竹島一件事考」가 번역되어 실려 있다.

13)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 「竹島-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에 실려 있는 『日本事跡考』를 인용하여 “오키(隱岐國)<sup>15)</sup> 해상에 竹島가 있는데 그 곳에는 대나무가 많고, 전복이 있는데, 그 맛이 매우 좋으며, 바다짐승이 있는데 이름은 葦鹿이라 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또 『竹島圖說』에는 “일본인이 오키의 북쪽 바다에 竹島가 있음을 알고 어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일본인은 호키(伯耆)에 사는 한 어부이다. 이 섬은 매우 조선과 가까운 섬이었는데도 옛날에는 오히려 조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 섬의 북쪽으로 3리 정도 떨어진 곳에 또 섬 하나가 있는데, 이곳에는 참으로 양질의 전복이 많다. 따라서 조선에서 3년에서 5년에 한번 씩 어부를 보내어 전복을 따게 하였다. 그 나라는 예전엔 이 竹島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元祿 5년(1692; 숙종 18) 봄에 이 섬에 표류한 사람이 처음으로 竹島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竹島考』의 인용에서 죽도, 즉 울릉도의 산물인 대나무, 전복, 葦鹿만을 거론하였다. 그에 반해 『竹島圖說』의 인용의 경우 ‘옛날에 조선인은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죽도를 알지 못하다가 1692년에 이 섬에 표류한 사람으로 인해 竹島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의 사료 ②에서 보다시피 『竹島雜誌』·『竹島考』·『竹島圖說』의 세 책을 통해 죽도를 일본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역 안에 있는 섬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② 위의 세 권의 책 <『竹島雜誌』 『竹島考』 『竹島圖說』>이 말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竹島는 실로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역 안에 있는 섬 중의 하나이다. 그곳에서 해상 이권을 우리가 장악한 후 7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조선인은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 같다. 그런데 元祿 5년(1692) 봄부터 조선인이 竹島에 와서 어로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해에도 또 오게 되었다. 이에 그 나라 사람 둘을 잡아 이 일을 에도(江戶)에 탄원하였다. 막부는 쓰시마(對馬)에 명령하여, 그 나라 정부에 서신을 보내 그 나라 사람이 다시 건너오는 것을 금지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서신이 몇 차례 오고간 후, 우리가 竹島라고 하는 섬이 그들이 울릉도라고 하는 섬이고 오래전부터 조선의 영토였음을 알게 되어,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섬에 가는 것을 금하게 되었다. 그때 오고간 서신이 『竹島記事』<sup>16)</sup> 및 『磯竹島覺書』<sup>17)</sup>에 실려 있다.

14) 이나바(因幡州); 지금의 돗토리현 동부.

15) 오키(隱岐國); 지금의 시마네현 오키군.

16) 『竹島記事』는 1726년에 쓰시마 藩士인 고시 쓰네우에문(越常右衛門)에 의해 편집된 ‘竹島一件’ 관계 사료집이다. ‘竹島一件’이란 1693년에 울릉도에서 일어난 안용복 연행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쓰시마번의 울릉도 영유권 교섭 관련 사건을 말한다. 이것은 안용복 연행사건과 거의 동시대의 일본 측 교섭 당사자가 정리한 중요한 공적인 기록이다. 서한을 제외한 번각문이 시마네현 ‘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에서 공개하였지만 틀린 부분이 많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간행의 학술지인 『독도연구』 4(2008.6)·5(2008.12)호에 『『竹島記事』가 수록되어 있다.

17) 『磯竹島覺書』는 『磯竹島事略』이라고도 한다. 츠크바대학 소장의 도서는 표지가 ‘磯竹島事略’이며, 본문의 표제는 ‘磯竹島覺書’로 되어 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의 도서는 표지와 본문의 표제가



위 결론에 근거하여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소위 竹島는 예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거친 섬(無人)荒島)으로서 70여 년간 우리나라 사람이 그곳에서의 해상 이익을 독차지해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타자와 세이세이가 인용한 『竹島考』의 경우 사료 ②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단지 대나무와 전복, 그리고 葦鹿이 많이 난다고만 하였을 뿐이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자국의 땅인 죽도를 “元祿시대에 조선과 서신이 오고 간 후 그 섬이 울릉도라는 것을 알고 그 섬을 그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하고 “그 나라의 古史에 의거하여 그 섬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들어, 아주 옛날 그 섬이 조선 땅에 속해 있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였다. 그에 관한 사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③ 『東國輿地勝覽』의 권두에 있는 「八道總圖」에 “강원도 바다 가운데 섬이 둘 있는데 서쪽에 있는 섬을 于山이라고 하고 동쪽에 있는 섬을 鬱陵이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우리가 松島와 竹島라고 말하는 두 섬인데 『東國輿地勝覽』의 말에 의하면 “울릉도는 강원도에 있고 武陵 혹은 羽陵이라고 하며, 울진현이 정동 쪽에 있다. 깎아지른 듯한 높은 산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데, 남쪽 봉우리가 조금 낮고 작다. 바람 부는 맑은 날이면 산봉우리의 나무와 산 밑의 모래사장이 역력히 보인다. 순풍이면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조선 성종 13년(1482), 우리나라 文明 14년에 편집된 책이므로 지금으로부터 실로 400년 전의 상황인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 섬이 그들의 屬島였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는 말이다. 그들의 古史를 보면, 그보다 더 예전에는 우산과 울릉이 같은 땅이었다. 『東國通鑑』 권5에는 “신라 지증왕 13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여 신라에 토산물을 바쳤다. 그 나라는 溟州의 正東쪽 바다에 있으며, 이름하여 울릉이라 한다. 둘레가 백리이고 매우 험한 땅이었으므로 이를 믿고 복종하지 않았다. 이찬[官名] 이사부는 하슬라주의 군주인데 ‘우산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천하여 위엄으로서는 따르게 할 수 없으니 계략을 써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나무로 사자의 형상을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섬에 가서 ‘너희가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즉시 이 짐승을 풀어놓아 너희를 밟아 죽이게 할 터이다’고 말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항복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계이타이(繼體) 천황 6년 임진년(512)의 일로서 지금으로부터 1370년 전의 일이었다. 그 후 오랫동안 신라의 屬島로 있었던 것이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1482년에 만들어진 『동국여지승람』의 사료의 검토를 통해 400년 전의 당시에는 죽도는 조선의 屬島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 사료에서 『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의 경우 동해 바다에 두 개의 섬을 그리고, 육지 쪽에 가까운 섬, 즉 서쪽에 있는 섬을 ‘우산도’

‘磯竹島覺書’로 되어 있다. 明治 8년(1875)에 太政官正院地誌課 나카무라 겐키(中村元起)가 교정을 한 ‘竹島一件’에 관한 明治 정부의 자료집이다. 전문의 번각문이 시마네현 ‘Web 다케시마문헌연구소’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틀린 부분이 많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의 저널 『獨島研究』2집과 3집에 영인, 정서되어 있다.

라고 그려두었고, 동쪽에 ‘무릉도’를 그려두었지만 거기에 설명문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지도에 마치 설명문이 있는 듯이 논하고 있다. 위 사료 ③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산과 울릉이 같은 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東國通鑑』의 사료 검토를 통해 죽도는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해 오랫동안 신라의 속도로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우산국 정복 사실을 통해 ‘우산=울릉’이라는 점을 은연중 드러내어 우산도, 즉 독도와 울릉도가 옛날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점을 흐리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현재 일본의 연구자들은 ‘우산도=울릉도’라고 하여 ‘우산도=독도’라는 점을 부정하고 있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高麗史』를 인용하여 고려시대 죽도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히 사료의 왜곡이 심하다.

- ④ 『高麗史』에 의하면 “태조 13년에 울릉도 사람인 白吉과 土豆를 사자로 보내어 方物을 바쳤다”고 되어 있는데, 고려 태조 13년(930)은 우리나라 다이고(醍醐) 천황 長興 1년으로 지금으로부터 952년 전이 된다. 세월이 흘러 고려 의종 13년에 이르러서, “왕이 울릉은 땅이 넓고 토지는 비옥하여 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명주도 監倉 김유립을 시켜 보고 오게끔 하였다. 유립은 돌아와서 ‘섬 안에 큰 산이 있고, 산을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 일만여보 걸으면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일만 삼천여보 걸으면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일만 오천여보, 북쪽으로는 팔천여보 걸으면 바다에 이릅니다. 촌락이 있었던 흔적이 일곱 군데 남아 있었고, 간혹 석복과 종, 석탑이 있었습니다. 柴胡와 藁本과 石南草가 많이 자랍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후에 최충헌이 ‘武陵의 토양이 비옥하고 진귀한 나무와 해산물(海錯)이 많습니다’라고 말 씌드려 사람을 보내 이것을 보고 오게 하였는데, 집터가 있었으나 주춧돌이 완전히 들어나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 살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에 東郡民을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게 하고 사신이 돌아왔는데, 와서 많은 진귀한 나무와 해산물을 바쳤다. 후에 자주 바람과 파도로 인해 배가 뒤집어져서, 많은 배와 사람을 잃었으므로 백성을 다시 되돌아오게 했다”라고 되어 있다. 의종 13년(1159)은 우리나라 니쥬(二條) 천황의 平治 1년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실로 722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당시 그 땅에서 백성을 옮긴 후 땅을 비워 두었다.

신용하는 기타자와 세이세이의 위 기록에 대해 “北澤이 『고려사』를 읽어보고 고려가 울릉도를 지배한 사실을 고증한 기록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태조 13년(930)에 울릉도인들이 方物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도 계속 고려의 울릉도 지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려 毅宗 13년(1159)에는 김유립을 보내어 물산을 조사하고 사람을 이주시키기도 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722년 전의 일이니, 고려가 울릉도를 통치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는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였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기타자와 세이세이의 사료 왜곡을 감지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다. 사료 ④의 기록과 아래의 『高麗

18) 신용하, 앞의 책, p.37.

史』의 기록을 서로 비교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⑤ 왕이 동해 가운데 있는 羽陵島는 지역이 넓고 땅이 비옥하며 옛날에는 州, 縣을 두었던 적이 있어서 백성들이 살 만하다는 말을 듣고 溟州道監倉 殿中內給事 金柔立을 시켜 가 보게 하였더니 유립이 돌아와서 그곳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그 의논이 그만 잠잠하여졌다.(『고려사』 권18 세가 의종 11년 5월 병자일)

⑥ 또 東海 중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땅이 비옥하고 진귀한 나무들과 해산물이 많이 산출되나 수로가 원격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끊어진 지 오래이다. 최이가 사람을 보내서 시찰한즉 과연 집터와 주춧돌이 완연히 있었으므로 동부지방의 군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그 후 풍랑과 파도가 험악해서 익사자가 많다는 이유로 이민을 중지하였다. (같은 책 권129 열전42 반역 최충헌전 부 최우 고종 30년)

사료 ⑤는 의종 11년(1157)에 백성들이 살 만하다는 울릉도에 명주도 감창사 김유립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지만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하여 군현 설치의 의논이 잠잠하였다고 한 기록이다. 그리고 사료 ⑥은 무신정권 때인 고종 30년(1243)에 최이가 동부지방의 군 주민들을 이주시켰지만 그 후 풍랑과 파도가 험악해서 익사자가 많다는 이유로 이민을 중지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사료 ④에서 보다시피 1243년 최이가 동부지방의 주민을 울릉도에 이주시킨 사실을 그의 아버지 최충헌으로 잘못 기재함은 물론 그 시간적 선후를 무시한 채 전체를 뭉뚱그려서 “의종 13년은 우리나라 니쵸(二條) 천황의 平治 1년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실로 722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 당시 그 땅에서 백성을 옮긴 후 땅을 비워 두었다”고 하여 의종 13년부터 땅을 비워 두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료 ⑤와 ⑥에서 보다시피 울릉도로 이주정책이 시행된 적도 없었고, 또 울릉도로부터 주민을 육지로 다시 끄집어내온 적도 없다. 사료 ⑥을 보면 고종 30년에 동부지방민을 울릉도로 이주시킨 적이 있지만 그 후 풍랑과 파도가 험악해서 익사자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이민을 중지하였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기타자와 세이세이가 사료 ④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육지로 끄집어내온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서 언급한 것처럼 땅을 비워둔 것은 아니었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다음 사료 ⑦에서 그 전 왕조, 즉 고려시대의 경우 ‘空島制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던 사람이 때때로 그 섬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제 『고려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의종 13년 이후 울릉도를 비워두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 자신 스스로 논리 전개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⑦ 또 『磯竹島覺書』는 『東國輿地勝覽』 및 『芝峯類設』을 인용하여 “조선 태종 때 그

섬으로 도망하는 유민이 심히 많다고 듣고, 다시 명령하여 삼척 사람 김인우를 안무사로 삼아 그 땅에서 사람을 나오게 하고 땅을 비웠다(刷出空其地). 인우는 ‘토지가 비옥하고 대나무는 크기가 큰 깃대만하고, 쥐의 크기는 마치 고양이만하며, 복숭아 씨앗의 크기는 마치 뒷박만한데, 거의 모든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적고 있다. 조선 태종 때란 고고마츠(後小松) 천황의 應永 7년에서 19년에 달하는 기간이다(1400~1412). 그런즉 대략 480여 년 전의 일이다. 그 전 왕조에서는 空島制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던 사람이 때때로 그 섬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았음을 알기에 충분하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磯竹島覺書』는 『東國輿地勝覽』 및 『芝峯類設』을 인용하여 조선 태종 때 김인우를 안무사로 삼아 그 땅에서 사람을 나오게 하고 땅을 비웠다(刷出空其地)”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 전 왕조에서는 空島制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살던 사람이 때때로 그 섬으로 이주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空島制’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짐짓 그 전 왕조, 즉 고려에서 공도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앞에서 의종대에 울릉도를 텅비우게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조선 태종조에 김인우로 하여금 ‘刷出空其地’ 하였음을 부각시켜 조선조에서 ‘공도제’가 시행되었다고 단정시 강조하였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竹島考證』에서 조선 태종조와 세종조에 울릉도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가 설읍의 논의가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세종 20년, “縣 사람인 만호 南顯가 수백 명을 이끌고 가서 도망간 백성을 모두 잡아 金丸 등 70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고, 그 땅은 결국 비워졌다(其地遂空)”고 하였다. 남호, 실은 남회를 파견하게 된 동기는 그 땅을 비우게 하는 공도정책 때문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㉘ 강원도 감사 柳季聞이 아뢰기를, “무릉도의 우산은 토지가 비옥하고 산물도 많사오며, 동·서·남·북으로 각각 50여 리 연해의 사면에 석벽이 둘러 있고, 또 선척이 정박할 만한 곳도 있사오니, 청컨대, 인민을 모집하여 이를 채우고, 인하여 만호와 수령을 두게 되면 실로 장구지책이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세종실록』 세종 18년 윤6월 갑신)

㉙ 강원도 감사 유계문에게 전지하기를, “지난 병진년 가을에 경이 아뢰기를, ‘무릉도는 토지가 기름져서 곡식의 소출이 육지보다 10배나 되고, 또 산물이 많으니 마땅히 縣을 설치하여 수령을 두어서 영동의 울타리를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곧 대신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이 섬은 육지에서 멀고 바람과 파도가 매우 심하여 헤아릴 수 없는 환난을 겪을 것이니, 군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그 일을 정지하였더니 경이 이제 또 아뢰기를, ‘古老들에게 들으니 옛날에 왜노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여러 해를 두고 침략하여, 嶺東이 빈 것 같았다’고 하였다. 내가 또한 생각하건대, 옛날에 왜노들이 날뛰어 대마도에 살

면서도 오히려 영동을 침략하여 함길도에까지 이르렀었는데, 무릉도에 사람이 없는 지가 오래니, 이제 만일 왜노들이 먼저 점거한다면 장래의 근심을 또한 알 수 없다. 현을 신설하고 수령을 두어 백성을 옮겨 채우는 것은 사세로 보아 어려우니,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하거나, 혹은 토산물을 채취하고, 혹은 말의 목장을 만들면, 왜노들도 대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몰래 점거할 생각을 내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왜노들이 와서 산 때는 어느 시대이며, 소위 고로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며, 만일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바람과 파도가 순조로운 때가 어느 달이며, 들어갈 때에 장비할 물건과 배의 수효를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세종실록』 세종19년 2월 무진).

⑩ 前 護軍 南薈와 前 副司直 曹敏을 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강원도 해변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때 국가에서는 무릉도가 海中에 있는데, 이상한 물건이 많이 나고 토지도 비옥하여 살기에 좋다고 하므로, 사람을 보내 찾아보려 해도 사람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해변에서 이를 모집하니, 이 두 사람이 응모하므로 멀리서 경차관의 임명을 주어 보내고, 이에 도망해 숨은 인구도 탐문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이었다(『세종실록』 세종 20년 4월 갑술).

⑪ 호군 남회와 사직 조민이 무릉도로부터 돌아와 복명하고, 포획한 남녀 모두 66명과 거기서 산출되는 沙鐵·石鍾乳·生鮑·大竹 등의 산물을 바치고, 인하여 아뢰기를, “發船한 지 하루 낮과 하루 밤 만에 비로소 도착하여 날이 밝기 전에 인가를 몰래 습격하온즉, 항거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본군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곳 토지가 비옥 풍요하다는 말을 듣고 몇 년 전 봄에 몰래 도망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은 사면이 모두 돌로 되어 있고, 잡목과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서쪽 한 곳에 선박이 정박할 만하였고, 동서는 하루의 노정이고 남북은 하루 반의 노정이었습니다” 하였다(『세종실록』 20년 7월 무술).

위 사료 ⑧~⑪을 검토해보면 세종 18년과 19년에 울릉도에 설읍 추진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강원도민이 울릉도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은 설읍 주장에 대한 세종은 ‘현을 신설하고 수령을 두어 백성을 옮겨 채우는 것은 사세로 보아 어려우니,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하거나, 혹은 토산물을 채취하고, 혹은 말의 목장을 만들면, 왜노들도 대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몰래 점거할 생각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만일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바람과 파도가 순조로운 때가 어느 달이며, 들어갈 때에 장비할 물건과 배의 수효를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비록 세종이 설읍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하거나, 혹은 토산물을 채취하고, 혹은 말의 목장을 만들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땅임을 인식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듬해인 세종 20년(1438) 4월에 남회를 ‘茂陵島巡審敬差官’을 파견한 것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였다.<sup>19)</sup>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태종 세종 연간에 중앙정부로부터 ‘안무사’, ‘순심경차

관'이 파견된 사실이나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가 대국의 땅임을 인식시키겠다는 데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사료 ⑦에서 '空島制'를 처음 제기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와 조선시대에 울릉도가 텅비었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 측 사료를 검토해보면 울릉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본토로부터 조세 포탈과 피역을 위해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원래의 지역으로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조세 수취와 역역동원을 부과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쇄환' 혹은 '쇄출' 조치에 따른 결과로서 울릉도가 '刷出空其地', '其地遂空'한 것이지 결코 '공도제'란 정책이 시행된 것은 아니다.<sup>20)</sup>

'공도제'를 제기한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이후의 조선 측 자료에서도 죽도, 즉 울릉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텅 빈 섬이었다는 사료를 발췌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⑫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성종 2년에 이르러, 삼봉도라는 또 다른 섬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있어서 朴宗元을 보내어 그 섬을 보고 오게 하였으나 바람과 파도로 인해 배를 대지 못하고 돌아왔다. 동행한 두 척의 배가 울릉도에 배를 대어 大竹과 전복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길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시다'라고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竹島 외에도 섬이 또 하나 더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섬을 찾아가 하려 사람을 보내 바다를 탐색하게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같은 책에 또 『芝峯類設』을 인용하여 "鬱陵島는 武陵이라고도 하고 羽陵이라고도 하는데, 동해에 있으며 울진현과 마주보고 있다. 섬 안에 큰 산이 있으며 둘레는 백리이다. 바람을 잘 타면 이틀 만에 도착한다. 신라 지증왕 때에는 우산국이라 불렀는데 신라에 항복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고려 태조 때는 섬사람(島人)이 方物을 바쳤다. 태종 때 안무사를 보내어 유민을 나오게 하고 그 땅을 비웠다(遣按撫使 刷出流民 空其地).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는 크기가 큰 것대만 하고, 쥐의 크기는 고양이만 하고, 복숭아 씨앗의 크기는 뒷박만하다고 한다. 임진왜란 후 가서 본 자가 있었는데 왜의 약탈을 당하여, 人家 굴뚝에서 두 번 다시 연기가 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최근에 듣기에 왜인이 磯竹島를 점거했다고 하며, 혹은 말하기를 磯竹島가 즉 울릉도라고 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상과 같이 『芝峯類設』(1614; 광해군6)에 실려 있는 '그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 크기는 큰 것대만하고'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竹島圖說』에도 있는 말인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말이 서로 들어맞으니 신기한 일이다. 임진왜란이란 文祿 1년(1592)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조선 정벌을 가리킨다. 이 책은 享保 11년(1726) 『竹島紀事』를 편집할 때에 80년 전의 저서의 취지를 기록하고 있으니 필히 寬永(1624~1643) 이전의 저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竹島를 점거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일이다.

사료 ⑫에서 보다시피 성종조에 삼봉도를 찾은 사람들이 울릉도에 들렀는데

19) 김호동(2008.6),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 관리정책」, 『동북아역사논총』 20호, pp.342-346.

20) 김호동(2005),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 관리정책」, 『동북아역사논총』 20호 참조.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자료, 그리고 『芝峯類說』(1614; 광해군6)의 ‘我太宗朝遣按撫使 刷出流民 空其地’의 구절의 인용이 그것이다. 특히 『지봉유설』에서 ‘임진왜란 이후 왜의 약탈을 당해 인가 골뚝에 연기가 나는 일이 없었다’고 한 기록, 그리고 ‘최근에 왜인이 기죽도를 점거했다고 들었다’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당시 일본 사람이 죽도를 점거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芝峯類說』에 실려 있는 ‘그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 크기는 큰 것대만하고’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竹島圖說』에도 있는 말인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말이 서로 들어맞으니 신기한 일이다”라고 하여 짐짓 『지봉유설』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1614년 일본이 말하는 죽도, 혹은 기죽도가 조선의 강역임을 주장한 조선 측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⑬ 또 慶長 19년(1614; 광해군6)에 宋氏(宗氏의 오류)가 竹島에 관해 요청할 일이 있어 사자를 조선에 보낸 적이 있다. 조선은 동래부사 윤수겸으로 하여금 우리가 말하는 竹島가 조선의 울릉도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그때의 글이 『善隣通書』 및 『朝鮮通交大紀』<sup>21)</sup>에 실려 있다. 대략 “글 속에 磯竹島를 자세히 조사하자는 말이 있으니 심히 놀랍고도 의아합니다. 이 계획이 과연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신이 와서 말하기를, 이 섬이 경상과 강원 두 도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이르니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울릉도라는 곳입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다. 부사 박경업의 서신에서 보면 “貴島가 磯竹島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는데 아직도 집착하고 있으니 심히 이상합니다. 이 섬이 우리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足下가 알지 못하는 바도 아니고 貴島가 가로챌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는 바도 아니면서 앞질러 엿보려 하니 이는 실로 무슨 마음에서입니까. 아마 좋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磯竹島라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의 울릉도입니다. 또 명나라의 翰林侍講 董越이 편찬한 『朝鮮賦』<sup>22)</sup>의 앞장에 조선팔도 총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강원도 울진포의 동쪽 바다에 섬 하나가 그려져 있고 陵山이라 적혀 있으니 그것이 즉 울릉도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이상이 조선의 역사에서 보이는 대략적인 竹島에 대한 기사라고 하면서 본문의 내용은 즉, ‘더 이상 竹島에 향해하지 말 것’이라는 말과 같다고 하였다. 『실록』 등의 관찬사서는 아니지만 『松湖實蹟』(義城金氏 松湖公派 종친회, 1998)에는 삼척영장 金鍊成이 광해군 5년(1613) 3월 甲士 180명과 포수 80명을 거느리고 울릉도로 향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울릉도에 간 이유에 대해서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무리들이 海島에 잠복해 약탈을 일삼았다. 조선에서 죄를 짓고 달아난 유민들이 그들과 함께 어

21) 『朝鮮通交大紀』; 松浦允任.

22) 『朝鮮賦』; 1488년 명나라 사신 董越이 英宗의 명령으로 조선영토를 견학한 후 작성한 건문록.

울려 울릉도를 소굴로 삼았다. 이에 조선정부는 김연성과 군사 260명을 울릉도에 보내 정세를 살피도록 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倭奴들이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모두 달아나 버려 뱃길을 돌려 돌아오는 도중 거친 풍랑을 만나 상관과 군졸이 탄 배가 전복되어 대부분 익사하고 배 한 척만 평해에 도착하니 생존자는 몇 사람에게 불과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의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준다. 기타자와 세이세이 역시 1613년의 일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614년의 기록을 『竹島考證』에 남겼을 것이다. 1613년 삼척영장 김연성의 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듬해인 1614년에 일본의 기죽도 조사에 대하여 조선이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사실을 의식한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元和 4년(1618) 호키의 상인인 大谷과 村川이 竹島에 도해하고자 청원하였으므로 청원을 허락하였고, 그 후 74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선은 계속 ‘竹島 영유’라는 명목에서 멀어지고 그 실질에 관여치 않았는데 元祿시대(1688~1703)가 되어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 땅에 있음을 알게 되자 옛적 일을 꺼내 이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기괴하다”고 하였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조선 측의 인용서를 점검한 결과 “1370년 전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는 竹島가 조선의 영역이었다고 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곳곳에서 사료의 왜곡과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유리한 사료만을 부각시켜 울릉도가 빈 섬(空島)임을 말하면서 조선의 정책이 ‘공도제’였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文祿·慶長이래(1592~1614) 元祿 9년(1696)에 이르기까지는 조선이 兵亂의 재해로 인하여 그곳을 도외시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거하도록 내버려두게 되었던 것 같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하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의 저서뿐만 아니라 명나라 사람의 저서에도 역시 종종 竹島가 우리나라 영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證左로 삼고자 한다’고 하였다.

- ⑭ 명나라 茅元儀가 저술한 『武備志』<sup>23)</sup> 권231 「日本考島名」에는 사쓰마(薩摩)<sup>24)</sup>의 다네가시마(種子島), 히젠(肥前)<sup>25)</sup>의 히라토시마(平戶島), 아키(安藝)<sup>26)</sup>의 미야지마(宮島) 등과 같이 호키에 竹島가 속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음을 다케시마(他計什麼)라 혼독하였다. 만일 이 섬이 조선의 땅이라면 ‘竹島(チカウ)’라는 음독이 붙었을 터이나 ‘다케시마’라는 일본 음이 붙은 것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섬을 점거하고 있었으므로 명나라 사람들 역시 우리의 영역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인데, 이것이 竹島가 우

23) 『武備志』; 茅元儀가 1619년에 편집, 1621년에 간행한 兵書.

24) 사쓰마(薩摩); 지금의 가고시마현 서부.

25) 히젠(肥前); 지금의 사가현과 나가사키현의 일부.

26) 아키(安藝); 지금의 히로시마현 서부.



리나라의 영역이라고 한 첫 번째 예이다. 그리고 명나라의 章潢이 저술한 『圖書編』<sup>27)</sup>의 「日本圖」에는 산인(山陰)지방 호키(伯岐)의 서쪽에 섬 하나가 그려져 있고 竹島<sup>28)</sup>라는 두 자가 적혀 있다. 같은 책의 「日本國 序」에는 “원편의 서쪽은 빗츄(備中)<sup>29)</sup>이고, 오른편은 역시 이나바(因幡)<sup>30)</sup>이며, 오른편의 서쪽은 호키(伯岐)”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注가 붙어 있는데 “바닷가는 모두 흰 모래로 덮여 있고, 배를 댈 곳이 없으며, 배를 댈 수 있는 포구는 오카사키(阿家殺記), 오코스케(倭子介), 타토구치(他奴賀知)에 있고 그 북쪽이 竹島인데 뱃길로 30리이다”라고 되어 있다. 즉 지금의 지형에서 이를 찾아 증명해보면, 이나바와 호키의 바닷가가 실로 모두 흰 모래로 덮여 있고, 배를 댈 곳이 없음이 『圖書編』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다. 이는 매우 신기한 일인데, ‘오카사키’는 ‘아카사키(赤岐)’이고, ‘오코스케’는 ‘오쓰카(大塚)’이다. 모두 야바세군(八橋郡)<sup>31)</sup>에 속한다. ‘타토구치’에 대해서는 아직 그곳이 어디인지 상세히 알지 못한다. 『圖書編』의 저자가 우리 땅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명나라 사람이었는데, 역시 호키의 바다에 있는 竹島를 우리 영역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竹島가 우리나라 영역이라고 하였던 두 번째 예이다. 그리고 명나라 王鳴鶴의 『登壇必究』<sup>32)</sup> 권 22 「日本國圖」에 보면 이와미(石見)<sup>33)</sup> 다지마(但馬)<sup>34)</sup>의 바다에 竹島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명나라 사람이 우리 영역으로 인정한 세 번째 예이다. 『武備志』와 그 외 두 책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편찬된 것이며 당시의 상황에 따라 모두 竹島를 우리나라 영역이라 하게 된 것이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竹島考證』의 첫머리를 머리말 대신에 “竹島考證引用書”를 열거하고 있다. 그 인용서, 즉 일본·조선·중국 측 책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 ⑮ 이상에서 열거한 세 나라의 책의 내용을 아울러 생각해보면 1300년 전부터 임진왜란까지는 竹島가 조선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에 두 말이 필요 없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부터 그 이후에는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竹島를 우리 영역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명나라 사람들의 저서 역시 竹島를 우리의 영역이라고 인정하였던 것이다. 또 명나라 사람들만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역시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던 같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芝峯類設』에서 말하기를 (“상략) 壬辰變 후에 가서 본 사람이 있는데[가서 보았다(往見)]는 것은 竹島에 갔다가 왔다는 것을 말함] 역시 왜에 의해 불타고 노략질 당하여 다시 인가에 연기가 오르는 일이 없었다. 근래에 듣기로는 왜인들이 磯竹島를 점거했다고 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에 따르면 조선인 또한 은연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竹島를 점거하도록 방임하고 있었던 같다. 따라서 慶長 19년(1614; 광해군 6) 병인년<sup>35)</sup>, 송씨에게 명하여 사람을 부산으로

27) 『圖書編』; 명 神宗 때의 章潢이 저술하여 1584년에 간행한 類書(백과사전).

28) 竹島; 문맥으로 봐서는 오키(隱岐)를 가리키고 있음(정영미).

29) 빗츄(備中); 지금의 오카야마현의 서부.

30) 이나바(因幡); 지금의 돗토리현 서부.

31) 야바세군(八橋郡); 지금의 東伯郡, 1899년에 3郡 통합에 의함.

32) 『登壇必究』 명나라 만력 27년(1599)에 王鳴鶴이 편집, 무관의 승진에 필요한 지식을 집성한 책.

33) 이와미(石見); 지금의 시마네현의 서부.

34) 다지마(但馬); 지금의 효고현의 북부.

보내어 竹島에 대해 담판하기에 이르렀으나 조선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竹島에 이주시키지 않았는데, 元和 4년(1618) 호키의 상인이 竹島에 도해하기를 청하여 막부가 이를 허가해 주었다. 그로부터 행정권리를 장악한지 어언 70여 년이 흘러 元祿 9년(1696)에 이르게 된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고려 및 조선의 사료의 왜곡과 편향된 자료의 인용을 통해 울릉도가 빈 섬(空島)임을 부각시키면서도 임진왜란 때까지는 죽도가 조선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에 두 말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란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만이 죽도를 자국이 영토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사람도 그것을 인정했고, 조선인 역시 묵인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芝峯類設』을 인용하여 ‘往見’을 제주를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인들이 기죽도를 점거했다는 이야기를 ‘근래 들었다(近聞)’고 한 것을 마치 역사적 사실인양 의미를 부여하여 결정적 증거로 들이대고 있다.

北澤正誠은 『竹島考證』 上卷 끝부분에서 慶長 19년(1614) 이후의 죽도 도해 연보를 들어 죽도 점거 후의 매년의 상황을 제시하고, 원록 9년 막부의 명으로 도해가 금지되기까지의 대략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竹島考證』 中卷에서 원록 6년(1693) 조선인 두 명, 즉 안용복 등을 잡아 나카사키에 보낸 것을 기화로 對馬守 宗氏が 동래부윤과 20여 차례 서신을 주고받은 것을 기록한 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⑬ 죽도는 元和 이래(1615~1623) 80년 동안 우리 국민이 漁獵을 하던 섬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역이라는 것을 믿으며, 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어렵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였다. 저들이 처음에는 竹島와 鬱島가 같은 섬임을 몰랐다고 답해 왔으나 그에 대한 논의가 점점 열기를 띠게 되자 죽도와 울도가 같은 섬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우리가 국경을 침범했다고 책망했다. 古史를 보자면 울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文祿以來(1592~1614) 버려두고 거두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빈 땅[空地]에 가서 살았다. 즉 우리 땅인 것이다. 그 옛날에 두 나라의 경계가 항상 그대로였겠는가. 그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되고, 버리면 다른 사람의 땅이 된다. 우리 동양 제국의 3백년간의 예를 들어 논해 보자. 대만은 예로부터 명나라의 땅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사람이 거두어들이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 섬을 버리자 네덜란드가 갑자기 점거하여 네덜란드의 땅이 되었다. 그리고 鄭氏가 무력으로 그것을 빼앗았으니 또 鄭氏의 땅이 되었던 것이다. 興安嶺 남쪽은 예로부터 청나라 땅이었다. 청나라 사람들이 거두어들이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 섬을 버리자 러시아족이 즉시 그곳을 점거하게 되었다. 영국과 인도, 프랑스와 베트남, 네덜란드와 아시아 남양군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조선만이 홀로 80년간 버려두고 거두지 않던 땅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국경을 침범했다고 책망하고 있다. 아무런 논리도 없이 옛날 땅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당시 정부는 8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漁獵을 해올 수 있었던 그 이익을 포기하고 하루

35) 慶長 19년(1614)은 병인년이 아니라 갑인년이다.

아침에 그 청을 받아들였으니 竹島에 鬱島란 옛날 이름을 부여해 준 것은 당시의 정부인 것이다. 실로 당시는 항해를 금하는 정책을 썼다. 외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그로 인해 오가사와라섬을 개척하자는 말이 나왔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왜 죽도를 돌려주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당시의 정책은 편한 것만을 추구하였을 뿐 개혁하여 강성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외국의 종교를 받드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나라의 적으로 보아 엄한 형벌을 가했다. 각 나라에서 내항하는 것을 금하고, 중국, 조선, 네덜란드 이외에는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쇄국정책을 취하고 이용하지 않았다. 혹 큰 계획을 세우고 외국으로 나가자 하는 지사가 있어도 자기 집 봉당에서 허무하게 늙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릇 죽도는 매우 협소한 땅으로 아직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땅이나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홀로 큰 한숨이 나온다.

北澤正誠은 위 자료에서 보다시피 “鬱島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文祿以來(1592~1614) 버려두고 거두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빈 땅[空地]에 가서 살았다. 즉 우리 땅인 것이다. 그 옛날에 두 나라의 경계가 항상 그대로였겠는가. 그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되고, 버리면 다른 사람의 땅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울릉도를 조선이 80년간 버려두고 거두지 않아서 일본의 땅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것을 안용복 사건 직후 한국의 땅이라고 돌려준 것은 당시 일본정부가 쇄국정책을 취한 탓이라고 하면서 당시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숨을 지었다.

### 3. 맺음말

北澤正誠의 『竹島考證』은 일본 외무성의 지시에 의해 1881년(명치 14) 8월에 완성되었다. 조선정부가 그 해 5월 22일 일본의 울릉도 침탈에 대해 영토침략으로 간주하여 일본 외무성에 항의함과 동시에 이규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상황<sup>36)</sup>에서 이루어진 조사보고서이기 때문에 “오늘날

36) 『高宗實錄』 高宗 18년 5월 21일, 「統理機務衙門에서 보고하였다. “지금 江原監司 林翰洙의 狀 牌를 보니, ‘鬱陵島搜討官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면서 말하기를, 순찰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찍어 해안에 쌓고 있었는데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 곁에 앉아 있기에 글을 써서 물어보니 일본 사람이 나무를 찍어 元山과 釜山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대답하였답니. 일본 선박의 왕래가 근래 대중없어서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폐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稟處토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채벌을 금하는 산은 원래 중요한 곳이고 조사하여 지키는 것도 역시 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남몰래 나무를 찍어서 가만히 실어가는 것은 邊禁에 관계되므로 엄격하게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차 이 사실을 문건으로 작성하여 東

의 松島는 元祿 12년에 竹島라고 불렀던 섬으로 옛날부터 우리나라 영역 밖에 있었던 땅”이라고 하여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 조선의 수도정책을 ‘空島制’라 명명하고 빈 섬, 버려진 섬임을 『竹島考證』의 곳곳에서 부각하기 위해 한국 측 사료의 왜곡을 가하였다.

기타자와 세이세이는 죽도를 조선의 땅임을 결론으로 내세우면서도 『竹島考證』에서 ‘버려진 땅을 내가 취하면 내 땅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그의 논리를 받아들여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하여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런 점에서 독도에 대한 무주지선점론이나 고유영토설은 기타자와 세이세이의 『竹島考證』에서 제시한 것을 실천에 옮긴 것일 뿐이다.

당초 메이지 정부는 ‘죽도(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규원이 울릉도 검찰사로 갔을 때 울릉도의 長斫之浦에서 桶丘尾로 향하는 바닷가 돌길 위에 일본인이 세운 標木에 ‘日本國 松島 槻谷 明治二年(1869)二月十三日 岩崎忠照 建之’라고 쓰인 뜻말을 발견한 것은 그것을 입증시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 고유영토설을 주장한 기타자와 세이세이가 울릉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결론을 내려 외무성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안용복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17세기 인지설, 혹은 고유영토설 역시 안용복의 활동이 최대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왜 일본 측 연구자들이 안용복을 ‘거짓말쟁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 몰아 부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기타자와 세이세이가 죽도(울릉도)를 결국 조선의 땅이라고 한 것처럼 안용복의 활동을 인정하는 한 그들의 다케시마(竹島=독도) 고유영토설은 논리적 설득력을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8일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竹島-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팸플릿에서도 안용복의 주장은 믿을 바 못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기타자와 세이세이가 제기한 고유영토설의 이론적 근거는 ‘공도제’에 있다. 그 이론은 일본의 竹島 고유영토설을 끌어내는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 연구자들마저 ‘공도제’ 논리에 매몰되어 도리어 고려 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섬에 대한 조선정부의 정책을 ‘공도정책’이라 명명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

萊府 倭館에 내려 보내서 일본 外務省에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이 섬은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텅 비워두는 것은 대단히 허술한 일입니다. 그 형세가 요충지로 될 만한가 방어를 빈틈없이 하고 있는가를 두루 살펴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副護軍 李奎遠을 鬱陵島檢察使로 임명하여 가까운 시일에 빨리 가서 철저히 타산해보고 의견을 갖추어서 보고하여 이로써 문의해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参考文献】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호동(2005) 「조선초기 울릉도·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호동(2007) 『독도·울릉도의 역사』 경인문화사, 2007.

김호동(2008) 「조선 초기 울릉도·독도 관리정책」 『동북아역사논총』 20호

바른역사정립기획단(2006) 『독도자료집 II [竹島考證]』

송병기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신용하(1999) 「竹島考證」, 『독도영유권자료의 탐구』 4

北澤正誠(1881) 『竹島考證』·『竹島版圖所屬考』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2008) 「竹島-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 要 旨

『Jukdogojeung』 of Buktaekjeongseong was written in 1881(Meiji Era 14years) by directing from the Japane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Joseon government considered Japan's Ulleungdo disseizin on May 22 in the year as the invasion of the territory. Joseon made a protest with the Japane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decided to invest by sending Lee, Gyuwon in Ulleungdo.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search report was accomplished. "Songdo at that time was the island called Jukdo in Genroku Era 12 years, the territory was outside of Japan since early time". Ulleungdo was Joseon territory. On the other hand, he named Joseon's retrieving policy as 'empty-island policy' and tried to bring into relief the empty island as the deserted island in 『Jukdogojeung』 to distort Korean historical material.

Kitazawa Masanari concluded Jukdo was Joseon's territory, but deployed his logic, 'If I take the deserted land, that is my land', in 『Jukdogojeung』. The Japane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ok his logic and insisted Dokdo was the ownerless land in 1905. Dokdo was incorporated into Japan's territory. It was one of the reasons Kitazawa Masanari put the ownerless land of Dokdo or the native territory in 『Jukdogojeung』 in practice.

Key words: Buktaekjeongseong, Jukdogojeung, empty-island policy, Songdo, Jukdo, Dokdo, Ulleungdo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